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_WOR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제1조 거래조건 <p>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_____)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u>직전 영업일</u>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 <p>②~⑦ (기재생략)</p>	제1조 거래조건 <p>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_____)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u>직전 은행영업일</u>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 <p>②~⑦ (현행과 같음)</p>	용어 수정
제2조 거래기간 ~ 제8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제2조 거래기간 ~ 제8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추가약정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추가약정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제 1 조 (용어의 정의) ~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기재생략)	제 1 조 (용어의 정의)~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현행과 같음)	

<p>제3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p> <p>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⑤ (기재생략)</p> <p>제 4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 (기재생략)</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③~④ (기재생략)</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6조 (대출의 제한) (기재생략)</p> <p>제7조 (면책)</p> <p>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p> <p>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 (기재생략)</p>	<p>제3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p> <p>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 4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6조 (대출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제7조 (면책)</p> <p>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p> <p><삭제></p> <p>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 (현행과 같음)</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항 번호 삭제 및 금융소비자 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 (금감원 권유)</p>
--	--	--

추 가 약 정 서

추 가 약 정 서

<p>(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p> <p>제1조 (서류의 제출) ~ 제2조 (입금계좌)</p> <p>(기재생략)</p> <p>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③ (기재생략)</p> <p>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대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p> <p>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대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대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p> <p>⑥ (기재생략)</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p> <p>(기재생략)</p>	<p>(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p> <p>제1조 (서류의 제출) ~ 제2조 (입금계좌)</p> <p>(현행과 같음)</p> <p>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대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대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p> <p>(현행과 같음)</p>	<p>외상대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체상 및 용어 수정 체상</p>
---	--	---

외상대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기재생략)

외상대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현행과 같음)

2. 개정 시행일: 2019년 7월 4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